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6가합516153(본소), 2016가합530623(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매매대금 등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회사

변론 종결 2018. 4. 6.

판결 선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1) 피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채권은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56,000주의 주권을 인도하라.

이 유

1.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원고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것으로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에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위 각 청구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13. 8. 7. 주식회사 E(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E'라 한다)의 인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1) 원고는 납입자본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여 E의 신주 56,000주의 발행에 참여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보유하는 E 주식 50,100주의 매수대금 20억 7,000만원과 피고의 E에 대한 가수금 14억 3,000만 원 합계 35억 원을 지급한다.
- 3)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16.까지 위 35억 원 중 25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E 등기 임원 전체의 사임서를 제출한다.
- 4)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 15.까지 나머지 10억 원을 지급하면 E가 발행한 주식 106,100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

5) 위 2013. 11. 15.까지 E가 발행한 주식 106,100주는 피고가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에스크로한다.

나. 피고는 2013. 8. 13. 및 같은 달 14. E로부터 14억 3,000만 원, 원고로부터 10억7,000만 원
합계 25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원고, 피고, 에스크로우 대리인은 2013. 8. 14.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에스크로우 계약서(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우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E 주식 56,000주를, 피고는 같은 주식 50,100주를 에스크로우 대리인에 게 예치하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에스크로우 대리인은 위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피고는 위약벌로써 원고 소유의 E 주식
56,000주를 몰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본소청구 및
반소 중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중 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나머지
인수대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상계항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는 E에 대하여 12억 2,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분명히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악의적인 미고지 행위와 그에 따른 이 사건 확약서의
체결로 12억 2,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인수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20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E는 2010. 1. 5.부터 같은 해 2. 11.까지 6회에 걸쳐 주식회사 F으로부터 16억 2,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1.20. 그 중 4억 원만을 변제하여 12억 2,5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한다)가 남아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F은 2010. 1. 19. 'H은2010. 1. 19. F에 37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0. 4.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이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H이 2010.4. 7.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0. 4. 13.경 E로부터 12억 2,500만 원을 추심한 점, 3피고의 대표이사인 I은 H, F, E 등 관련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5 I 및 H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F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E의 순자산가치에 반영되는 점, ⑥ 회사를 인수할 때는 실사를 통하여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⑦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위 E 인수대금 35억 원의 30%가 넘을 정도로 상당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고려하여 산정한 적정가격보다비싸게 E를 인수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0. 31. F이 E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갑 제8,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6544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원고(F) 승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위 2015. 1. 14.에서야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업인수시 기업의 순자산가치만으로 인수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E의 적정한 인수가격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은 성질상 매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한다.

나)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E의 순자산가치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반영하기 전에는 5,311,330,329원이고, 반영한 후에는 3,710,616,082원으로 그 차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E의 인수가격은 35억 원이고, 피고가 고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은 12억 2,5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000,000,000원(35억 원 × 16억 원/53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상계

위와 같이 피고가 2013.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않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0억 원의 인수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3. 11. 15. 도래하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권은 2013. 11. 15.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것이다.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6. 11.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위 나머지 인수대금 채권 10억 원과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 10억 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3. 11. 15.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본소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소 중 주권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나머지 인수대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에스크로우 계약에 따라 위약벌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E 주식 56,000주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6, 11, 23호증, 을 제9호증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수대금 2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E 등기 임원 전체의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불이행한 점, ② 피고는 위 25억 원의 지급이 부적법하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E 주식 56,000주에 관하여 2013. 9. 9. 발행신주처분금지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2013. 10. 15. 주식반환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점, ③ 원고가 2013. 11. 13. 피고에게 나머지 인수대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기일인 2013. 11. 15. 원고에게 위인수대금의 수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④ 피고의 위 인수대금 채권 10억 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정한 나머지 인수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혜정, 판사 성재민, 판사 편병호